



의안번호	제49호
회의 연월일	2024. 4. 15. (제536회 정기회의)

심의 의결 사항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제정안 (대통령령)

제출부서	경찰청 (범죄예방대응국)
제출연월일	2024. 4. 4.

112상황기획계장, 치안상황과장

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

1. 제정이유

112신고의 운영·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·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9870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 7. 3. 시행)됨에 따라,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, 112신고 접수·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(안 제2조)

-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종류, 근무체제, 근무요원 등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하여 상황실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

나. 112신고의 접수 등(안 제3조)

- 112신고 및 처리의 대응체계, 경찰관의 조치 후 보고, 종결 후 112신고자에 대한 통보 등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

다.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(안 제4조)

- 관계기관에의 요청방식, 관계기관의 조치 후 통지의무 등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

라. 출동 현장의 촬영·관리(안 제5조)

- 출동 현장 영상촬영장치의 설치대상, 출동 현장에서 영상정보의 촬영시 촬영사실표시 의무 및 그 방법, 영상관리체계구축·운영의무 등 수집된 영상정보의 촬영·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

마. 112신고의 기록·보존 등(안 제6조)

- 112신고 기록의 범위 및 보존 기간, 보존조치의무 등 112신고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규정

바. 112시스템의 구축·운영(안 제7조)

- 112시스템 구축의 내용, 112시스템 개선계획 등 112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사.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(안 제8조)

-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다른 기관과의 사전협의 내용 등 다른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규정

아. 교육·훈련(안 제9조)

- 112시스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, 교육 및 훈련위탁 등 112 시스템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

자. 112신고자 포상(안 제10조)

- 112신고 포상금 지급대상, 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 규정

차. 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제11조)

- 과태료 부과기준을 ‘일반기준’과 ‘개별기준’으로 구분하여 합리성 제고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112신고 포상금 관련 2025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함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없 음

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) ① 경찰청장은 112치안종합상황실 편성 및 112신고의 접수·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·조정한다.

② 「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과 시·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.

③ 112치안종합상황실은 법 제6조제1항의 112신고 관련 업무와 치안상황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④ 112치안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.

⑤ 경찰청장, 시·도경찰청장, 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대한 지리감각, 언어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우선 선발·배치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3조(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)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112

신고의 접수·처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고의 긴급성과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.

② 112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범죄나 각종 사건·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의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해야 한다.

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조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.

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처리를 종결한 이후 112신고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4조(공동대응 또는 협력 요청)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에 유선·무선 통신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·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,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,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
2.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

3. 그 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경찰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련기록, 증거 유무 등을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④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사항 외에 관계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신고를 이관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출동현장의 촬영 및 관리)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순찰차 등의 경찰장비(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)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영상촬영장치로 출동 현장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, 소리, 안내판, 안내서면,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.

③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

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로 한다.

⑤ 경찰청장은 영상촬영장치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영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6조(112신고의 기록 및 보존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보존해야 할 112신고 기록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: 3년(다만, 단순 민원·상담 신고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)

2.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 내용의 녹음·녹화자료: 3개월

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기록물 중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.

③ 경찰청장등은 제1항의 112신고 기록을 112신고 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의 기록·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7조(112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 ①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112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

1. 112신고의 접수·처리
2. 112신고 정보의 공유·이관
3.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
4.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
5.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경찰청장은 112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112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8조(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) ① 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관계기관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목적, 연계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, 연계방식, 보안성,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
②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협의 내용을 검토하고, 그 결과를 요청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사업이 「전자정부법」 제67조,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82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협의 검토 대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른 정보시스템과의

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9조(112시스템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) ① 경찰청장은 112시스템 전문인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1. 112신고 관련 법령
2. 112시스템의 제원, 성능 및 조작방법
3. 112시스템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
4. 그 밖에 112시스템의 운영·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「경찰공무원법」 제22조제3항 및 「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12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시스템 전문인력의 교육·훈련 및 교육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10조(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) ① 경찰청장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2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살인, 강도, 절도, 납치·감금, 성폭력, 가정폭력,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
2. 각종 사건·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
3.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

포상심사위원회가 포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112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112신고자 포상심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·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④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1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12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,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

2. 법 제8조에 따른 112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

3.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대응 또는 협력에 관한 사무
4. 법 제10조에 따른 112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무
5. 법 제11조에 따른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
6. 법 제12조에 따른 112신고의 기록·보존에 관한 사무
7. 법 제16조에 따른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수한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·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경우	법 제4조제2항	200	400	500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항제3항에 따른 토지·물건 등의 일시사용, 사용의 제한, 처분 또는 토지·건물·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	법 제8조제3항	100	200	300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	법 제8조제4항	50	75	1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치안상황과장	
연 락 처	(02) 3150 - 2646